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교 육 청 소 년 과

구미 고교인재-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구 미 시

구미 고교인재-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우수한 역량을 가진 지역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 기업에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구미 고교인재-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가)「지방자치법」제117조

나)「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4조, 제6조

다)「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

2) 필요성 : 기업 연계 인턴십 사업의 경험과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 발굴, 인재 매칭, 사업 관리 등 체계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

다. 위탁 사무 내용 : 구미 고교인재-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업무 전반

- 사업 홍보, 사전 직무교육, 참여학생·기업 모집 및 매칭, 인턴십 운영·관리, 사업성과 분석·관리 등

라. 위탁기간 : 2027. 3. ~ 2028. 2.

마. 사업대상 : 관내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50명 정도

바. 사업내용 : 시-기업체-학교 협력 고등학생 채용형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기업 수요 및 직무 특성을 반영한 사전 직무교육 및 현장실습 실시
-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참여 학생의 조직 적응 및 직무 정착 지원
- 참여 학생 및 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0백만원(시비)

(단위 : 백만원)

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비고
200	40	140	20	

아.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26.9.29.)

3. 부서의견

○ 지역 학생 인턴십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제117조

(2)「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3)「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편성

다.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 감사결과 : 적정

구미 고교인재-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성과평가

1.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26. 9. 14.~ 9. 18.
○ 대　　상 : 구미 고교인재-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 위탁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원장 문추연)
○ 평가범위 : 2026. 4. ~ 9월 위탁사무 운영 현황
○ 평가내용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운영의 적정성, 추진실적 및 성과 등
○ 평 가 자 : 교육청소년과장, 교육정책팀장, 주무관
○ 평가방법 : 수탁기관 제출자료 검토 및 평가표에 따른 추진실적 및 성과 평가

2. 평가결과 및 총평

○ 평가결과

평가항목 (배점)	총점 (100)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운영 효율성	예산관리 적정성	실적 달성도	프로그램 운영·관리	직무정착 지원노력
		10	10	15	25	20	20
100	82	10	8	13	14	20	17

○ 총　　평

- 사업계획에 따라 참여학생 및 기업 모집, 직무교육, 학생·기업매칭 등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사업비 또한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현재 인턴십 참여실적은 다소 저조하나, 학생·기업 매칭 및 사전 교육을 거쳐 10월 이후 기업 현장에서 인턴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특성상 평가 시점에는 실적이 충분히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향후 참여학생의 현장실습 및 기업 참여실적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말 기준으로 최종 실적과 성과가 구체화 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수탁기관은 인턴십 운영 및 학생·기업 간 지속적인 소통·관리를 통해 참여율과 직무 정착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공공위탁사무 감사 결과

1. 감사개요

○ 부 서 명 : 교육청소년과

○ 위탁사무 : 구미 고교인재-지역기업 인턴십 지원

○ 감사기간 : 2026. 9. 14. ~ 9. 18.

○ 감사범위 : 위탁사업 추진 전반

- 사업계획 및 협약사항 이행 여부
- 참여학생·기업 모집 및 매칭 등 사업 추진실적
- 사전 직무교육 및 인턴십 운영 준비사항
- 위탁사업비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 사업 추진 관련 증빙자료 및 관리실태

○ 감 사 반 : 교육청소년과장 등 3명

○ 감사방법 : 관계서류 및 증빙자료 검토

2. 감사결과

○ 지적사항 : 0건

○ 처분내용 : 시정 0건, 주의 0건

감사내용 (검토 또는 조치사항)	조치계획(의견)	비고
협약서에 따라 위탁사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특이사항 없음.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제6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6. 생략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기술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사업

2. 기술교육훈련사업

3. 인력양성사업

4. 창업보육 및 성장보육지원사업

5. 정보교류사업

6. 기술혁신지원사업

7. 시험생산사업

8. 시설·장비 운용사업

9. 전자·정보통신기기 등 부품소재육성사업

10.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탁사업과 용역사업

11. 그 밖에 기술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구미 고교인재-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본 사업은 지역 고교생 대상 인턴십 운영, 참여기업 관리, 학생·기업 인센티브 지급 등을 포함하는 계속사업으로, 공공위탁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의 지속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사업비는 구미시 기업지원사업 운영 요령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

 나. 사업의 지속성과 성과관리 체계 유지를 위해 매년 동일 규모(학생·기업)를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정액 편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도비	119	-	-	-	-	119
	○시비	162	200	200	200	200	962
	소계(a)	281	200	200	200	200	1,081
세출	○인건비	56	40	40	40	40	216
	○간접비	28	20	20	20	20	108
	○직접비	197	140	140	140	140	757
	소계(b)	281	200	200	200	200	1,081
□ 총 비용(a-b)		0	0	0	0	0	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119	-	-	-	-	119
시 비	162	200	200	200	200	962
민 간	-	-	-	-	-	-
기 타	-	-	-	-	-	-
합 계	281	200	200	200	200	1,081

5. 부대의견 : 위탁금의 상세내역은 사업계획 등에 따라 조정 가능

6. 작성자 :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 박도연(☎480-270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 분	금액(천원)	산 출 근 거
합 계	200,000	
인 건 비	40,000	· 참여인력 - (책임급) 6,952천원×11개월×10%(참여율)×2명 15,294천원 - (선임급) 5,615천원×11개월×20%(참여율)×2명 24,706천원
직 접 비	140,000	· 교육운영비(직무교육) 27,500천원×1식 27,500천원 · 직무교육이수장려금 100천원×50명 5,000천원 · 인턴현장실습지원비 500천원×50명 25,000천원 · 근무환경 개선비 1,200천원×50명 60,000천원 · 전문가활용비 100천원×50명×3월 15,000천원 · 국내여비 20천원×25회 500천원 · 회계 감사비 1,500천원×1건 1,500천원 · 사무용품비 250천원×2회 500천원 · 회의비 200천원×5회 1,000천원 · 연구·개발수당 4,000천원×1회 4,000천원
간 접 비	20,000	· 기관공통경비 20,000천원

소 관 부 서		교육청소년과
입 안 자	과 장	민 명 숙
	팀 장	심 주 희
	담 당 자	박 도 연 (480-2702)